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다시,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2022년 6월 24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6.23.(목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2. 6. 23.(목)	담당부서	소재부품장비총괄과 바이오융합산업과
담당과장	김창희 과장(044-203-4910) 김영만 과장(044-203-4390)	담 당 자	전성우 사무관(044-203-4915) 강홍구 사무관(044-203-4396)

백신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4개 기술을 소부장 핵심전략기술로 선정

- 바이오 분야 으뜸기업 발굴·육성, 해외 인수합병(M&A) 등 지원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이창양)는 **백신 및 첨단바이오의약품**의 **원활한 생산과 투자 활동을 지원**하기 위해 소재·부품·장비(이하 '소부장') **핵심전략기술**에 **바이오 분야 4개 기술을 추가**하여 고시*함

* 고시명 :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, 핵심전략기술 선정·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

Ministry of Trade, Industry and Energy

○ 산업부는 '22년 소부장 경쟁력강화 시행계획('22.3.3)에 따라 **대내외 기술환경 변화, 품목별 공급안정성 등을 고려**하여 **소부장 핵심전략기술(현재 100개*) 재편**을 추진하고 있으며,

* (반도체) 17개 (디스플레이) 10개, (자동차) 13개, (기계금속) 38개, (전기전자) 18개, (기초화학) 4개

○ 우선, 코로나-19 백신 개발 시급성 및 업계 수요 등을 고려하여 **백신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4개 기술**을 상반기 중 **추가**하는 것임

< 핵심전략기술 추가 대상기술(4개) >

분야	대상기술
사. 바이오 (4개)	1) 백신제조용 핵심 소재 및 제조기술 : 백신제조용 핵산(mRNA, DNA 등), 단백질, 바이러스 벡터 제조기술
	2) 백신 제형화 소재 및 제조기술 : 백신 제형화에 필요한 지질나노입자(LNP), 면역증강제 등 기초소재 제조기술
	3)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용 핵심 세포 및 소재 제조기술 : 세포 유전자 치료제 제조용 세포, 바이러스 벡터 제조기술
	4) 바이오 의약품 생산용 세포 배양 소재 및 장비 제조기술 : 세포 배양을 위한 배양기기(바이오리액터, 담체) 및 배지 제조기술

윤유진 / 홍보담당관 / 2022-07-01 09:11:56

□ **‘핵심전략기술’**은 소재·부품·장비 중 **산업 가치사슬**에서 원활한 생산과 투자 활동을 위하여 **핵심적 기능**을 하는 기술로서,

○ **소재부품장비산업법 제12조**에 따라 산업 가치사슬에 대한 **조사·분석** 등을 통해 핵심기술을 도출하고, **관계부처 협의** 및 **소부장 경쟁력 강화위원회 심의**를 거친 후 소부장 핵심전략기술로 **선정**됨

> □ **핵심전략기술 선정기준** (법 제12조제2항)
> 1. 국가 및 산업활동과 관련한 전략적·안보적 중요성
> 2. 특허 보유 여부 등 국내 기술수준과 산업화 단계
> 3. 교역규모 및 국제 분업구조
> 4. 산업별 생산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
> 5. 시장성장 전망 등 미래 유망성
> 6. 그 밖에 소재·부품·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□ 핵심전략기술·품목*에 대해서는 **으뜸기업 신청 자격 부여**(소부장법 제13조), **환경·고용 규제완화 특례**(소부장법 제63조~제67조), 국내외 소부장기업 **출자·인수 세액공제**(조특법 제13조의3), 국가기술개발 과제 **민간부담금 완화** 등을 지원함

Ministry of Trade, Industry and Energy

*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: 핵심전략기술이 적용된 소재·부품·장비

□ 산업부는 기업의 보유기술·품목 또는 국가기술개발 과제가 **핵심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**을 지원하기 위해 **‘핵심전략기술·품목심의위원회’를 운영**함

○ **확인 신청**은 **소부장넷(www.sobujang.net)**을 통해 **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접수**하고, 분야별 소위원회 검토 및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**매월말 핵심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결정**하여 **회신**하며,

○ **특례 지원**은 해당기업이 ‘핵심전략기술·품목심의위원회’의 **심의결과를 첨부**하여 각 **특례제도 소관부처의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**함

< 핵심전략기술 확인 및 특례 적용 절차 >

확인 신청	→	전문가 검토	→	심의	→	결과 통보	→	특례신청
기업→산업부		소위원회		심의위원회		산업부→기업		기업→각부처

* 지원기관(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) 연락처 : 전략기술팀, ☎053-718-8460, 8421, 8428

윤유진 / 홍보담당관 / 2022-07-01 09:11:56

□ 한편, 탄소중립, 디지털전환(DX) 등 **차세대 유망 신산업** 분야의 공급망 선점을 위해 소부장 **핵심전략기술 선정범위를 확대**할 계획이며,

○ **금년 하반기**에 관계부처 협의 및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핵심전략기술의 **추가 선정**을 추진할 계획임

□ **이경호 소재부품장비협력관**은 "바이오 분야 **소부장 핵심전략기술 선정·지원**을 계기로 **수요-공급기업간 적극적인 협력 투자**를 통해 **최종 제품 및 공정이 최적화**되기를 기대한다"며,

○ "정부도 그간 발표한 소부장 정책 및 기술개발 계획을 **차질없이 이행**하여 해외의존도가 높은 핵심품목에 대해서 **대외리스크에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경쟁력을 확보**해 나가겠다"고 덧붙였다.

<별첨> 「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, 핵심전략기술 선정·재검토 절차 등에 관한 고시」 개정안
<참고>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고시 주요내용

Ministry of Trade, Industry and Energy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 전성우 사무관(☎044-203-4915), 바이오융합산업과 강홍구 사무관(☎044-203-439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윤유진 / 홍보담당관 / 2022-07-01 09:11:56

참고 **소부장 핵심전략기술 고시 주요내용**

□ **고시명** :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, 핵심전략기술 선정·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

□ **추진 경과**

○ **소재부품장비산업법 제12조, 동법 시행령 제19조**에 근거하여 **고시 제정**('20.9.29)

○ 국가기술개발 참여기업의 민간부담금 완화 적용을 위한 **핵심전략기술 관련 과제 확인 규정 추가**('21.3.30, 일부개정)

○ 소부장 으뜸기업 선정('21.1월, '22.1월), 인수합병(M&A) 세액공제 등 추진

□ **고시 주요 내용**

Ministry of Trade, Industry and Energy

○ **(핵심전략기술)**, 법 제12조에 따른 핵심전략기술 목록의 근거 마련(제4조제1항, [별표])

○ **(핵심전략기술 관련 품목)** 조특법상 인수합병(M&A)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핵심전략기술 관련 품목을 규정(제4조제2항)

○ **(핵심전략기술·품목·과제 확인)** 소부장산업법 등의 특례* 적용을 위한 핵심전략기술 확인 절차 규정(제5조 및 제6조)

* ① 화관법, 화평법, 산안법, 공장안전보고서 관련 특례 등
② 핵심전략기술 관련 '품목'에 대해 조특법 上 인수합병(M&A) 세액공제 적용
③ 핵심전략기술 관련 '과제'에 대해 민간부담금 완화 적용

- 신청 처리절차, 심의위원회·소위원회* 설치·운영 규정

* (심의위) 당연직 위원 5명(산업부, 과기부, 중기부, 환경부, 고용부) 및 핵심전략기술 분야 학식·경험이 풍부한 위촉 위원 15인 이내 / (소위원회) 위촉 위원 5명 이내

< 핵심전략기술 확인 및 소부장산업법등의 특례 적용 절차 >

윤유진 / 홍보담당관 / 2022-07-01 09:11:56

확인 신청	→	전문가 검토	→	심의	→	결과 통보	→	특례신청
기업→산업부		소위원회		심의위원회		산업부→기업		기업→각부처

Ministry of Trade,
Industry and Energy

윤유진 / 홍보담당관 / 2022-07-01 09:11:56